

호텔인터불고 원주 웰니스센터 회원 이용약관

[제정 2023.1.1 약관]

WELLNESS CENTER
HOTEL INTER BURGO WONJU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텔인터불고 웰니스센터(이하 "웰니스센터" 라 칭함) 운동시설에 대한 회원들의 센터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 간의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여 회원 및 센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편의를 증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웰니스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호텔인터불고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이라 함은 개인회원, 부부회원, 법인회원 1, 법인회원 2,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운동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웰니스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4조 운영권

- ① 웰니스센터의 운영권은 회사만이 갖는다.
- ② 회원은 회원자격의 취득을 이유로 웰니스센터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원자격 이상의 권한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 ① 회원은 회칙 및 세칙, 기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 및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미성년자 포함)
- ③ 웰니스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원가입 신청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 ① 회원은 개인회원, 부부 회원, 법인회원1, 법인회원2,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개인회원 및 부부회원 자격요건은 아래 각호와 같다.
 - 피부병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자.
 - 몸에 문신 등으로 인하여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웰니스센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자.
 -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회원으로서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인 남녀 개인.
- ③ 법인회원의 자격요건은 아래 각호와 같다.
 - 정부 투자기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법인
 - 이용자는 본조 ②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인회원1은 기명 1인으로 카드 1매 발급하고, 법인회원2는 기명 2인, 지명 1인으로 카드 3매를 발급한다.
- ④ 특별회원은 주한 외국인 및 그 가족과 기타 회사가 정하는 자로 하고,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심사

웰니스센터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웰니스센터의 운영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웰니스센터는 제6조 ②항이 정한 자격요건에 반하는 자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입회 후라 할지라도 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에 해당하면 탈회시킬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연회비

가입 때 필요한 보증금과 연회비는 별도 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

제9조 입회 절차

웰니스센터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과 연회비 전액을 납부 하여야(단, 연회비는 웰니스센터 운영 시점으로 한다) 한다.

- 입회신청서(소정 양식)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매(3cm X 4cm)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법인회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제10조 회원등록, 회원증

- ① 회원에게는 회원 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웰니스센터 및 회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카드를 제시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② 회원 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 회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고, 회원 카드를 분실, 도난 혹은 훼손하였을 때는 바로 신고하여, 소정의 수수료(W10,000원)를 낸 후 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양수, 양도 및 명의변경

- ① 개인회원, 부부회원 및 법인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 3년 후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 및 양도로 인한 명의변경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권 양수인의 가입승인 여부는 웰니스센터가 정한 회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양도할 수 있다.
- ② 회원자격의 양도는 서면으로 웰니스센터의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양수 심사 통과자는 회칙 제9조에 따른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원자격과 부수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웰니스센터가 이를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양수,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거절

- ① 웰니스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원의 명의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1조 1항 또는 2항, 3항을 위반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경우.
 - 세칙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양도인이 명의변경 신청 시까지 웰니스센터에 지고 있는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전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 거절로 인해 양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여 양도인은 웰니스센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제13조 개인회원 사망 시의 회원자격승계

- ① 개인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한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 ② 전항의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은 사망한 회원의 회원 자격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웰니스센터는 회원자격승계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단독 상속인이 사망한 회원과 성별이 다를 경우.
 - 단독 상속인이 제6조 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망한 회원이 명의변경 신청 시까지 웰니스센터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단독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회원자격 승계 신청에는 제9조에서 정한 서류(상속인의 것, 다만, 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신하여 회원자격승계신청서)에 입회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자격을 승계한 상속인은 사망한 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 등 회원자격 상실을 포함한 각종 이용 제한 및 세칙을 그대로 승계한다.
- ⑤ 본 조의 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은 승계인이 부담한다.

제14조 부부회원 사망 시의 절차

- ① 부부회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한 회원의 입회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을 때 생존한 회원이 웰니스센터로부터 반환받을 입회보증금 차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입금 없이 개인회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된 회원자격의 존속 기한은 전환 전 부부회원 자격의 존속 기한과 같다.
- ④ 본 조의 신청에 있어 부부회원은 사망한 부부회원 일방의 입회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본 조의 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되 웰니스센터가 정한다.

제15조 법인회원의 지명사용자 변경

- ① 법인회원이 지명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9조에서 정한 서류(다만, 회원 가입 신청에 대신하여 지명이용자변경신청서)에 기존 지명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회원 카드를 첨부하여 지명이용자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지명사용자변경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신규 지명사용자에게 회칙 제6조 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전 항에 위반한 명의변경 신청의 경우.
 - 법인회원이 지명사용자 변경신청 시까지 웰니스센터에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본 조의 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은 승계인이 부담하되 웰니스센터가 정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웰니스센터의 세칙에 명시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세칙에 명시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② 회원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동반객을 입장시킬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웰니스센터가 정한 회칙 및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웰니스센터의 품위와 명예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자신과 동반객의 웰니스센터 이용으로 발생한 사용료, 서비스료, 음식료 등의 제반 비용과 회원과 동반객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반객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입회 시 기재한 입회신청서의 제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즉시 웰니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웰니스센터 회원의 귀책으로 한다.
- ⑤ 회원은 웰니스센터 시설을 이용할 때 자신의 부주의나 센터의 지시에 어긋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상실

- ①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회원이 보증금의 환부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한다.
 - 회원의 사망 시,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의 경우

-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 아래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박탈되는 경우.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회비, 기타 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납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웰니스센터에서 서면에 의한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센터의 제 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 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웰니스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회원권을 이용·도용, 무단 이용, 할인 미적용 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 회원이 센터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18조 이용 제한

① 웰니스센터 시설의 개·보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행정처분, 천재지변 및 특별행사의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웰니스센터는 운영 사정에 따라 회원, 동반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지급된 카드 1매당 1일 1회 사용으로 한정한다.

④ 회원은 위 각 항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웰니스센터는 회원이나 동반객 또는 웰니스센터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웰니스센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웰니스센터는 회원과 동반객이 센터시설 이용 중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으로 인해(본인이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 모두 포함) 일어난 사망, 부상, 질병 또

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탈회 및 휴회

① 회원은 웰니스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청산인이 탈회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원이 합병되어 소멸할 때 존속하는 신설법인이 제6조 3항의 요건을 갖추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고, 그 승계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회원이 장기출장, 상병 등 장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예상될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회할 수 있다.

④ 경영상의 이유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설을 폐쇄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단, 연회비는 사용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이에 대하여 웰니스센터 회원은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1조 보증금 반환

회칙 제18조 1항, 세칙 제9조에 의거 회원이 탈퇴하면 회원이 낸 보증금을 탈회 신청 후 2개월 이내 무이자로 전액 반환하며, 연회비는 선납한 연회비 중 이용하지 않은 미 경과 분에 대하여 월 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2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웰니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② 웰니스센터 안내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웰니스센터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등록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의사표시

웰니스센터 회원에 대한 의사표시나 통지는 회원이 가입할 때 제공한 주소지로 발송하되 제17조 4항에 의거 회원이 개인신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24조 기타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세칙 및 센터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세칙

센터는 이 회칙의 위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관할법원

센터와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센터에 게시하거나 비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호텔인터불고 웰니스센터(이하 "웰니스센터" 라 칭함)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회보증금, 연회비

- ① 웰니스센터의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는 가입 안내서에 따르고, 연회비는 매년 1년분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자격이 상실될 때 자격상실 기점으로부터 미 경과 분 연회비는 월 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3조 시설 이용 및 특전

- ① 회원은 웰니스센터의 시설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우선으로 적용받는다. 단, 회원의 균등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이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별도의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 호텔의 영업 시설 사용 시 회원 카드를 제시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특전은 매회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회비납부, 기타요금

- ① 본 웰니스센터의 보증금은 회원자격 상실 또는 탈회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전액 반환한다.
- ② 회원의 연회비 체납의 경우, 납일일 기준 2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당해 회원이 이에 불응한 경우, 센터는 당해 회원에 대한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된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회원의 웰니스센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다음 해 연회비 납입기한을 당해 연도 연회비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으로 한다.
- ④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며 회원이 부담한다.
- ⑤ 동반한 비회원이 부담할 요금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동반한 회원이 책임진다.

- ⑥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강습에 참여하는 자는 소정의 강습료를 내야 한다.
- ⑦ 회원이 회비 및 기타요금을 납부일까지 미납 시 회사가 정하는 일정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⑧ 회비 및 기타요금에 관하여는 회사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운영시간

- ① 개장 운영시간은 평일 06:00 - 22:00 / 주말, 공휴일 07:00 - 20:00로 하되, 시설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휴업일은 주 1일의 휴업일을 둘 수 있고, 휴업일은 사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연회비 및 수수료 조정

웰니스센터는 각종 회비 및 수수료를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상승 및 경제 여건의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연회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만료 후 적용한다.

제7조 회원 카드발급 수수료 조정

회칙 제10조 3항에 의해 회원 카드를 재발급 또는 갱신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카드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양도 및 그 수수료

- ① 회원은 회원자격을 양도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의 양수인은 회칙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회칙 제7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회원자격 양수인이 밝아야 할 입회 정차는 회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③ 회원이 회원자격을 양도하고자 할 때 센터에 양도 양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회원자격의 양수인은 보증금의 3%(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조 탈회 절차

- ① 회원이 웰니스센터를 탈회하고자 할 때는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탈회원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탈회할 수 있다.
- ② 탈회 시 회원이 낸 보증금은 탈회 신청 후 2개월 이내 무이자로 전액 반환하며, 연회비는 선납한 연회비 중 이용하지 않은 미 경과 분에 대하여 월 할 계산을 하여 반환한다.

제10조 휴회 신청

- ① 회원이 해외 출장, 질병, 기타 센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6개월 이상 센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휴회 7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휴회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회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웰니스센터는 회원이 회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② 웰니스센터는 회원자격 박탈을 결정하기에 앞서 회원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세칙의 개정

이 세칙은 웰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13조 안전, 사고 보상

- 웰니스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법 등을 위해 운동시설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의뢰 시에만 제공할 수 있다.
 - 센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① 웰니스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알려야 한다(미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② 웰니스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고객지원실)에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으면 3개월(90일) 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기타사항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센터에 게시하거나 비치한 날부터 시행한다.